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562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효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1. 25.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260,044원 및 그 중 15,045,902원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20. 12. 22.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20. 12. 23. 접수 제49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한진희

별지